

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 인터넷에서 「파인」 두 글자를 쳐보세요

“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도 참고 자료			
보도	2017. 6. 2. (금) 조간	배포	2017. 5. 31.(수)
담당부서	보험감독국 소비자보호총괄국	진태국 국장(3145-7460), 설인배 국장(3145-5700),	양진태 팀장(3145-7471) 김성균 팀장(3145-5702)

제목 : 금융꿀팁 200선 - ⑤ 보험가입자가 반드시 알아둘 5대 권리

-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하여
 - 매주 1~3가지씩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안내하고
 - 동시에 2016.9.1일 개설한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에도 게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순한번째 금융꿀팁으로, “보험가입자가 반드시 알아둘 5대 권리”를 별첨과 같이 안내해 드림

<별첨> 금융꿀팁 200선 - ⑤ 보험가입자가 반드시 알아둘 5대 권리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거래 과정에서 경험한 불합리한 금융관행 및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은 '금융관행 개혁 포털' (<http://better-change.fss.or.kr>) 내 '국민 참여방'으로 제보 바랍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제 목	보험가입자가 반드시 알아둘 5대 권리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1) 전업주부 A씨는 대학 동창 모임에 갔는데, 보험설계사를 하는 친구로부터 보험 가입 권유를 받아서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암보험을 청약하고 보험료를 냈음. 다음 날 A씨는 아들을 위해 작년에 가입한 보험에서도 암이 보장된다는 점을 알고 암보험계약을 청약한 것을 후회하였음. ■ (사례2) 직장인 B씨는 사무실에 찾아온 보험설계사를 통해 연금보험을 가입하였음. 회사 일로 바쁘게 지내던 B씨는 보험가입 후 2달이 지난 후 곰곰이 생각해보니, 설계사로부터 청약서 등 계약 관련 서류를 일절 받지 못한 점이 떠올라 보험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이 들었음. ■ (사례3) 서울에 사는 직장인 C씨는 월요일에 지방에 사는 부모님이 다쳤을 때를 대비해서 상해보험 청약을 하고 보험료를 냈음. 다음 날인 화요일에 아버님이 계단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으셨으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증권을 아직 받지 못한 상황 이어서 혹시나 보상을 받지 못할까 노심초사했음.
	<p>☞ 보험에 가입할 경우 아래 5가지 권리를 꼭 기억하고 활용하세요!</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background-color: #f0f0ff;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보험가입자가 반드시 알아둘 5대 권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철회권리 : 15일 이내에는 보험계약 철회 가능 ② 청약철회 후에도 보장받을 권리 : 사고발생 사실을 모르고 철회한 경우에는 보장 가능 ③ 품질보증해지권리 : 불완전판매 보험계약은 3개월 내 취소 가능 ④ 기존계약 부활권리 : 부당권유로 해지시 6개월 내 부활 가능 ⑤ 승낙전 보장받을 권리 : 최초 보험료 낸 경우에는 보장 가능 </div>

① 청약철회권리

청약철회권리(Cooling-off)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아무런 불이익 없이 청약을 철회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보험계약자는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라 하여도,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인 경우에만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예시) 5월 1일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3주 후인 5월 22일에 보험증권을 수령한 경우, 5월 1일부터 30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 보험회사는 철회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보험료 반환이 3일보다 늦어진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 이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그러나, 이러한 **보험계약 철회권**이 모든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 등 청약철회의 실익이 없는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할 때는 **가입목적**이나 유사보험 **중복가입 여부** 등을 가입 전에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히 가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보험상품

- ▶ 자동차보험 중 **의무보험**(대인배상 I, 대물배상(보상한도 2천만원까지))
- ▶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단기보험)
- ▶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보험**
- ▶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채무자의 보증보험)
 - 단, 보험계약자(채무자)가 채권자의 동의를 얻으면 보험계약 철회 가능
- ▶ **단체보험계약**

② 청약철회 후에도 보장받을 권리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 **피보험자에게 입원, 수술 등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해당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자의 **청약철회**가 그대로 인정되어 보험계약이 **소멸된다면**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보장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비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계약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모르고 청약철회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신청했더라도 보험계약이 그대로 유지되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③ 품질보증해지권리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시 아래와 같은 **불완전판매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통상 “**품질보증해지권리** 또는 **제도**”라 부름)할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해지가 가능한 경우

- ▶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 ▶ **약관의 중요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 * 계약무효 사유, 계약해지 효과 등 보험계약 상 주요 사항
- ▶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내지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품질보증해지권리(제도)**”를 행사하여 계약을 취소할 경우,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철회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불이익 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그에 대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④ 기존계약 부활권리

보험설계사 등의 **부당한 권리**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동일한 보험회사의 **유사한 보험***에 신규 가입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 보험 계약을 부활**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97조)

* 기존 보험계약과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하며, 위험보장의 범위가 **비슷**해야 함

따라서, **승환계약***으로 인해 기존계약과 새로운 계약의 **보장범위**가 달라지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험소비자의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자는 기존 보험계약을 **부활**함으로써 승환계약 이전과 **동일한 보장을 받고**, 신규 계약을 **취소**함으로써 **아무런 불이익 없이** 보험료와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설계사 등의 권리로 기존보험계약을 해지한 후 일정기간 내에 **유사한 보험에 신규 가입**하거나, 새로운 보험을 가입한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유사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를 의미

또한, 아래와 같은 **승환계약**이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은 **부당한 권리**로 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보험계약자는 보다 손쉽게 **기존계약을 부활**하여 승환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권리로 인한 승환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 ▶ 보험설계사 등의 권리로 ①기존계약의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계약을 해지한 후 **신계약을 가입하거나, ②신계약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계약을 해지한 경우
- ▶ 보험설계사 등이 ①기존계약의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계약을 해지한 후 **신계약을 가입하거나 ②신계약 가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계약을 해지하게 하면서, 보험기간 및 예정이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경우**

⑤ 승낙전 보장받을 권리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해 보험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체결되며, 보험회사는 청약을 승낙한 경우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의 내용을 기재하고 보험회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권

그러나,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보험증권을 받기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승낙 전 보험사고”)라 할지라도, 보험계약자가 청약 시 최초 보험료를 이미 낸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과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를 낸 후 승낙 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 할지라도, ①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의무”(상법 상 고지의무)를 위반했거나, ②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보장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인수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의무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청약서에 고지할 사항을 미리 작성한 질문표를 이용하며,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을 시에는 약관 내용에서 정한 보장을 받지 못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참고1

청약철회권리와 품질보증해지권리 비교

구 분	청약철회권리	품질보증해지권리
사 유	. 청약철회의 전제가 되는 사유 없음	. 보험회사 등이 약관설명의무, 약관 및 청약서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하지 않은 경우
대 상 보험 상품	. 모든 보험상품 (단, 단기보험상품 등 일부 보험상품은 청약철회 불가)	. 모든 보험상품
행 사 가능 대상	. 일반보험계약자: 행사 가능 . 전문보험계약자*: 행사 불가	. 일반·전문보험계약자* 모두 행사 가능
행 사 기 간	.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단, 청약일부터 30일 이내) . 계약 성립 전에도 행사 가능	.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 계약 성립 후에만 행사 가능
효 과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 보험료 」를 전액 환급 . 보험회사가 철회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이 지난 경우 에는 「 이자** 」를 더해서 환급 (단, 신용카드로 보험료 납부 시 이자 부지급)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 보험료 」에 「 보험료 납입일 이후 이자** 」를 더해서 환급

* 국가,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등을 의미하며, 전문보험계약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보험업법 제2조,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 등에서 규정

** 이자 :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참고2

관련 보험약관 조항

- * 다음의 약관조항은 생명보험표준약관의 관련 조항을 예시한 것으로, 보험상품별 약관마다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17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18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자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3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재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